

校正廳本『書傳諺解』의 經學的 고찰 *

유영옥 **

1. 머리말
2. 『서전언해』의 편찬과 간행
3. 『서전언해』의 체재
 - 1) 『書集傳』에 입각한 義例
 - 2) 상황 논리에 입각한 존대법
4. 『서전언해』의 경문 해석
 - 1) 『書集傳』 준용 및 小註 · 古註 수용
 - 2) 기존의 通說 준수
5. 맺음말

1. 머리말

經學은 儒經을 訓詁 · 義理 · 考證 등의 방법으로 解釋 또는 閐述하는 경전해석학인데, 중국과 문자가 다른 우리나라에는 일찍부터 ‘언해’를 통해 경문을 해석하고자 애써 왔다. 그래서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경전해석학으로서의 주석서는 드물었고, 경서에 구결을 달고 언해를 시도하는 일이 보다 일반적이었다.¹⁾

경문을 번역하는 언해는 기본적으로 사상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조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일~2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학학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경학사의 시야에서 바라본 소학류(小學類) 문헌”의 발표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연구교수.

1) 崔錫起, 2003 「韓國經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大東漢文學』 19: 1998 「晦齋의 『大學章句』 改訂과 後代의 論辨」 『정신문화연구』 21-2.

선전기의 언해사가 口訣 단계에서 釋義를 거쳐 경전 전체를 諺解하는 진정한 언해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성리학 연구의 학적 성숙과 궤를 같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선조 18~21년에 완성된 교정청본 경서언해서는 그 동안의 우리 諺解史 경험의 바탕 위에 당대 經學의 연구성과를 충팔 수렴한 조선전기 경학 연구의 최고 결정판이라 할 것이다.²⁾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정청본 경서언해서는 주로 국어학 및 서지학의 연구 자료로 주목되고, 경학 방면에서 다루어진 일은 많지 않다. 특히 『서전언해』를 비롯한 삼경언해에 대한 연구성과는 더욱 적은 실정이다.³⁾ 이는 교정청본 경서언해서가 어떤 특정인의 경학사상을 대변하지 못할 뿐더러, 주석을 배제하고 經文만 逐字 直譯하여 깊이 있는 철학적 논변을 운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經文만 언해하더라도 경학적 특징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 무엇보다 교정청본 사서삼경언해는 諸說을 절충하되 七書의 朱註를⁴⁾ 臺本으로 삼아, 주자 성리학에 입각한 특정 해석을 국가적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⁵⁾ 특히 삼경언해 중 『서경』만 『書傳諺解』라고 한 것은, 蔡沈의 『書集傳』에 철저히 입각하여 언해했다는 표시로 보여, 이 시기 『서경』 해석의 『서집전』 의존도를 일견 짐작할 수 있다.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교정청본 사서언해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서언해의 언해 원칙이나 해석학적 특징들을 공유할 것이다.⁶⁾ 다만 『서경』은 본디 史冊에서 출발했고 경문의 眞偽 또한 논란되는 특별한 儒經이기에, 아

2) 유영옥, 2010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經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7 · 226면 참조.

3) 『서전언해』를 단독주제로 고찰한 논문은 유영옥, 2016 「校正廳本 『書經諺解』의 준대법」 『東洋漢文學研究』 44가 거의 유일하다.

4) 주자가 註를 붙인 사서삼경을 ‘朱子註七書’라 하는데, 염밀히 말하면 『서경』 주석은 「虞書」의 〈堯典〉 〈舜典〉 〈大禹謨〉만 주자의 手澤이고, 나머지는 주자의 제자 蔡沈이 師命을 받아 1199~1209년에 완성한 것이다.

5)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219면 참조.

6) 사서삼경언해는 언어적으로도 꽤 정체되고 균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서삼경은 조선 사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문헌이었기 때문에, 그 언해에 있어서도 규범적 측면이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영경, 2013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언해 양상과 표기상의 특징」 『우리말글』 57, 12면.

마도 사서언해와는 다른 면모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체재와 내용을 대략 훑어보아 그 경학적 특질을 개괄하고자 한다.

2. 『서전언해』의 편찬과 간행

선조조 官撰의 경서언해 사업은 國朝의 관례를 바탕으로 교정청을 설치하여, 선조 18년(1585) 1월부터 선조 21년(1588) 10월 29일까지 도합 3년 10개월을 소요하여 완료되었다. 언해 순서는 유추컨대 1585년 1월~1586년 2월 대략 『소학언해』와 사서언해를 먼저 마치고, 삼경언해는 『소학언해』와 사서언해를 거의 마친 1586년 초~1587년 12월 이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감하는 일이 계속 지체되어, 선조 21년 10월에 가서야 교정청본 경서언해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⁷⁾

도산서원이 소장한 교정청본 『소학언해』는 만력 16년(1588) 정월에 內賜된 것인데, 여기에는 만력 15년(1587) 4월에 쓴 이산해의 跋文이 있으니, 교정청본 『소학언해』는 편찬된 직후 곧장 1587년 4월~1588년 1월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하겠다. 도산서원이 소장한 교정청본 사서언해의 內賜記는 『맹자언해』를 제외하고⁸⁾ 모두 만력 18년(선조 23) 7월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학언해』는 교정청이 해체되기 전에 이미 간행 반포되었고, 사서언해는 편찬 완료된 뒤 최소 2년 안에 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청본 삼경언해는 선조 21년(1588) 10월 최종 완성된 뒤 미처 간행되지 못한 채 임란을 맞아 유실되고 말았다. 전란 종결 이후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경언해의 경우 『시경언해』의 일부만 수습되었고, 『서전언해』와 『주역언해』는 결국 완전히 잃어버렸다.⁹⁾ 이에 선조는 삼경을 다시 언해하여 간행하

7)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41-43면 참조.

8) 도산서원 소장 內賜本 중 『맹자언해』는 앞의 몇 장이 찢어져서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 또한 같은 날 내사된 것으로 보인다. 李忠九, 1990 『經書諺解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면 주185.

9) 『선조실록』 권162, 36년 5월 13일 戊辰 “三經 已爲讎校 未及刊行 失於兵火, 只詩經收拾若

고자, 먼저 재위 34년(1601) 9~10월 주역교정청을 설치하여,¹⁰⁾ 尹根壽를 총책임자로 한 60인이¹¹⁾ 선조 36년(1603) 『주역언해』를 완성해내었다.

『주역』을 재언해한 이후 교서관에서는 그 인멸을 염려하여 인출 반포를 서두르는 한편, 『주역언해』를 완료했으니 지금부터는 『서경』을 재언해하자고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교서관이 아뢰기를 “『주역언해』는 일시에 많은 관원들을 모아놓고 여러 서적을 가지고서 商確하고 절충하여 만든 책입니다. (중략) 만일 지금 인출하여 반포하지 않았다가 인멸되어 전하지 못하게 되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역경』은 이미 再校했고 『서경』은 이제 再校하여 다 없어진 前功을 이루려 하니, 여기에는 이왕의 일을 거울삼을 만합니다. (중략) 편한 대로 인출하게 하여 후학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편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¹²⁾

그렇지만 실제 작업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결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전언해』를 간행하는 도중인 선조 38년(1605) 11월까지도 『서경』의 재언해는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박진원이 “사서언해와 『시전언해』를 아직 완간하지 못한 권책과 『소학언해』를 兩南의 종이가 생산되는 고을로 하여금 開刊하여 반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내 생각 역시 그러하다” 하였다. 진원이 “왕세자께서 『상서』를 진강하시는 데 언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서』와 『예기』를 吐釋하여 『시전언해』를 開刊하듯이 하면, 비단 經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여염집의 訓蒙에도 크게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상서』의 吐釋과 印刊은 진실로 내 뜻이다. (중략)” 하였다.¹³⁾

干卷 而未得全秩, 易書兩經 則全無校本.”

10) 『선조실록』 권141, 34년 9월 5일 己亥; 권142, 34년 10월 13일 丁丑.

11) 許簇, 『岳麓集』 附錄 <周易校正廳宣圖座目>에는 海平府院君 尹根壽를 첫째로 하여 60명의 참여 인물이 품계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12) 『선조실록』 권162, 36년 5월 13일 戊辰 “校書館啓曰 ‘周易諺解 一時會多官 集衆書 商確折衷 作爲成書. (중략) 今若不爲印布 使之湮滅不傳 豈非可惜?’ (중략) 易則已爲再校 而書經今將更校 以致前功盡棄, 此則已往可鑑. (중략) 使之從便印出 以惠後學 似爲便益’ 允.”

13) 『선조실록』 권193, 38년 11월 3일 癸酉 ‘朴震元曰 ‘四書詩傳諺解未准卷 及小學諺解 令兩南產紙之邑 開刊頒布 何如?’ 上曰 ‘予意 亦如是也’ 震元曰 ‘王世子進講尙書 而無諺解. 自今尙書禮記吐釋 如詩傳諺解之開刊 則非徒經筵間有益 閭閻訓蒙 亦有大利矣.’ 上曰 ‘尙書

선조 36년(1603) 완성된 『주역언해』는 선조 39년(1606) 완간되었지만,¹⁴⁾ 『시경언해』와 『서전언해』는 아마도 선조조에는 끝내 간행되지 못한 것 같다. 왜냐면 광해군 2년 『시경언해』와 『서전언해』의 인출을 교서관에 새롭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서적은 全秩을 갖춘 것이 전혀 없다. 그 중 『용비어천가』, 『내훈』, 『서전언해』, 『시전언해』, 『유선록』 등의 책은 『좌전』의 인출이 끝나는 뒤에 즉시 이어서 인출할 것을 교서관에 말하라” 하였다.¹⁵⁾

교서관이 아뢰기를 “『용비어천가』, 『내훈』, 『서전언해』, 『시전언해』, 『유선록』 등 의 책을 『좌전』의 인출을 마치면 이어서 인출해야 하는데, 이 책들 중 어떤 책을 먼저 인출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서전언해』와 『내훈』을 먼저 인출하고, 『용비어천가』, 『시전언해』, 『유선록』을 차례로 계속 인출하라. 다만 서책을 인출하는 일은 걸핏하면 몇 년씩 끌면서 세월만 보내곤 하는데,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독촉하여 속히 인출을 끝내라” 하였다.¹⁶⁾

그런데 광해군 2년(1610) 9월 『서전언해』를 『시경언해』보다 먼저 인출하도록 명한 상황에서, 광해군 4년(1612) 1월 『시경언해』의 인출이 끝났는지 해당 관원을 포상하였다.

『시경언해』와 『내훈』을 교정한 홍문관의 前後 관원에게 가자하고 말과 물건을 차등지어 주었다. ○『신정사략』, 『통감찬요』, 『시경언해』를 書寫한 사람들에게 米布를 차등지어 하사하였다.¹⁷⁾

吐釋印刊 則固予意也. (하략)***

- 14) 『선조실록』 권203, 39년 9월 19일 乙酉 “以備忘記傳于政院曰 ‘江華實錄開閉時 先王朝實錄印出後 賞格考啓 且前日傳教周易諺解 及今次皇華集一件 天使時謄錄一件 顧天使謄錄一件 竝藏置. (하략)’”
- 15) 『광해군일기』 권27, 2년 윤3월 22일 丁卯 “傳曰 ‘東國書籍 全秩絕無. 其中如龍飛御天歌·內訓·書傳詩傳諺解·儒先錄等冊 待左傳畢印後 卽爲繼印事 言于校書館.’”
- 16) 『광해군일기』 권33, 2년 9월 19일 辛酉 “校書館啓曰 ‘龍飛御天歌·內訓·書傳詩傳諺解·儒先錄等書 待左傳畢印 當爲繼印，此冊中 何書先印乎?’ 傳曰 ‘書傳諺解·內訓 先爲印出，龍飛御天歌·詩傳諺解·儒先錄 鱗次繼印。但書冊印出之役 動經數年事涉玩悞，今後各別催督 從速畢印.’”

이로 보면 『서전언해』는 광해군 2~3년(1610~1611)에 『시경언해』보다 먼저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¹⁸⁾ 인조 7년(1629) 『서경』을 진강하면서 『서전언해』의 잘못된 곳을 다시 교정하여 인출하자고 하니, 아직까지는 혹여 재언해된 『서전언해』가 소폭 간행되었다라도 그것은 궁궐 내부용이지 頒賜할 정도의 정식 印刊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인조 7년에 『서전언해』의 교정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불투명하나, 최소한 인조 9년(1631) 이전에는 『서전언해』가 분명 완간된 것으로 보인다.

나만갑이 “-몇 자 원문 빠짐- 언해가 잘못된 곳이 매우 많아서 진강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몇 자 원문 빠짐- 교감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중략) 나만갑이 “-몇 자 원문 빠짐- 너무 많으니 제대로 다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잘못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우선 -몇 자 원문 빠짐-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본관에 있는 서책을 우선 교정하여 고치고 -몇 자 원문 빠짐- 기다려 다시 더 교정하여 인출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하였다.¹⁹⁾

경서와 언해를 北道에 하사하였다. 이에 앞서 鏡城의 유학 죄상례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 경서와 언해를 각각 1건씩 반사를 허락하여 강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²⁰⁾

드디어 三經 및 그 諺解와 『심경』 『근사록』 등의 책을 兩界에 반사하여 보내고 문관 수령도 많이 差遣하니, 양계의 文敎가 이완되었기 때문이다.²¹⁾

17) 『인조실록』 권49, 4년 1월 17일 壬子 “詩經諺解, 内訓校正 弘文館前後官員 加資給馬賜物有差. ○新訂史略, 通鑑纂要, 詩經諺解書寫人等 賦米布有差.”

18) 김항수, 1987 「16세기 경서언해의 사상사적 고찰」 『奎章閣』 10, 40면에서는 “주역언해는 1603년에 완성을 보았으며, 1612년에 시경언해와 서경언해를 간행하였다”했고, 윤용선, 2012 「諺解 자료의 역사와 언어 양상에 대한 검토」 『우리말글』 56, 147-148면에서는 “『周易諺解』(1606), 『詩經諺解』(1613), 『書傳諺解』(1613경)의 三經이 임진란 이후에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19) 『승정원일기』 인조 7년 5월 16일 庚子 “萬甲曰 ‘-數字缺- 諺解訛誤處甚多 不合進講. -數字缺- 校釋似好矣.’ (중략) 萬甲 ‘-數字缺- 浩大 難可盡爲校正. 甚訛難解處 姑-數字缺-講似爲宜當.’ 上曰 ‘在本館書冊 姑爲校正刪改 待國-數字缺- 更加校正印出 似好也.’”(晝講, 서경 우공 進講)

20) 『인조실록』 권25, 9년 12월 24일 壬辰 “賜經書諺解于北道. 先是 鏡城幼學崔尙禮等上疏曰 ‘(중략) 經書諺解各一件 請許頒賜 以資講習.’ 上許之.”

이처럼 삼경언해는 재언해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선조 18~21년 교정청본 삼경언해의原本과는 아무래도 완전히 일치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전언해』의 원본과 재언해된 책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을 것임은 아래의 예시에서 감지할 수 있다.

『월정집』〈沂國公先廟碑〉: 月汀 “欽哉하라 惟時” 여기 토는 마땅히 ‘欽哉惟時하라’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惟時’를 아래 문장과 이으면 온당하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簡易 “아마도 여기는 『상서』 吐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결국 ‘欽哉惟時’는 『상서』처럼 서로 연결해 하나의 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²²⁾

『서전언해』(現傳) 「虞書」〈舜典〉 26장: 帝曰 “(중략) 欽哉호야 惟時로 亮天功호라”

月汀 尹根壽(1537~1616)와 簡易 崔峴(1539~1612)은 〈沂國公先廟碑〉의 懸吐를 두고 “欽哉하라 惟時”로 토를 끊을 것인지 『서전언해』처럼 “欽哉惟時”로 구절을 이을 것인지를²³⁾ 논의하였다. 이 토론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립의 생몰연대로 보아 그들이 말하는 ‘상서토’는 재언해된 『서전언해』가 아니라 십중팔구 임란 이전 교정청에서 언해한 『서전언해』 원본일 것 같다. 그렇다면 선조 18~21년의 『서전언해』에는 ‘欽哉’와 ‘惟時’가 한 구절로 연결되어 “欽哉惟時”로 되어 있었는데, 임란 이후 『서경』이 재언해되면서 ‘欽哉’는 하나의 구절이 되고 ‘惟時’는 뒷구절에 붙어 “欽哉하야 惟時”로 변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란 이후 조정에서 삼경언해를 재언해할 때는 선조 18~21년에 완성된 교정청본 삼경언해와 최대한 동일하고자 애썼을 것이 틀림없다. 정경세가 재언해된 『서전언해』의 오류를 두고 “선조 19년(1586) 교정청의 경서언해 때 이 일

21) 『인조실록』 권50, 〈인조대왕 행장〉 “遂以三經及其諺解 心經·近思錄等書 頒送兩界, 文官守令 亦多差遣, 以兩界文教弛也.”

22) 尹根壽, 『月汀集:別集』「韓文吐釋上」 제83〈沂國公先廟碑〉“欽哉[爲羅] 惟時, 此吐 恐當曰欽哉惟時[爲羅]. 若惟時連下文 則未妥 如何? ○恐此全不得同尙書吐./ 終恐欽哉惟時 相連爲一句如尙書.” cf) 「韓文吐釋」은 韓愈의 문장 129편 중 懸吐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崔峴과 의논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원래는 ‘訂疑集覽’이란 이름으로 엮었던 저술이다 (김우정, 『月汀集』 해제).

23) 퇴계 이황의 『書釋義』에는 해당 조목이 없다.

을 특별히 주도하는 師儒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데서, 곧 인조조 『서전언해』와 임란 이전 교정청본의 『서전언해』가 동일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나만갑이 ”-몇 자 원문 빠짐- 언해가 잘못된 곳이 매우 많아서 진강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략)” 하니, 정경세가 “신이 병술년(선조 19년) 교정청에 - 몇 자 원문 빠짐 - 등용되어 많은 관원과 모여 교정하였으나 자세히 - 몇 자 원문 빠짐 -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장하는 師儒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²⁴⁾

따라서 비록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원본과 재언해된 『서전언해』 사이에 약간의 異同이 있을지라도,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어서,²⁵⁾ 현전 판본을 ‘교정청본 『서전언해』’로 명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²⁶⁾

3. 『서전언해』의 체재

1) 『書集傳』에 입각한 義例

교정청본 사서삼경언해는 釋義와 달리 音讀·吐·釋文의 세 요소를 갖춘 완성

24) 『승정원일기』 인조 7년 5월 16일 庚子 “萬甲曰 ‘-數字缺- 諺解訛誤處甚多 不合進講, (중략)’ 經世曰 ‘臣丙戌年登 -數字缺- 校正廳 多官會同校正 而不能詳 -數字缺- 舊 盖無主張師儒, 以致如此 (하략)’”

25) 또한 재언해된 『서전언해』 初刊本 및 그 覆刻本도 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주로 보는 庚辰內閣本(순조 20년, 1820)은 아마도 초간본이 후대로 전해지면서 약간 수정된 것일 것이다. 그 차이는 주로 국어학 측면에 해당될 것이다.

26) 현재 서울대 규장각과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17건(규12, 중5)의 『서전언해』(古書)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刊記가 있거나 유추할 만한 고서는 오른쪽과 같이 5건이다. 17건의 表題는 ‘書傳諺解’ 13건, ‘書解’ 2건, ‘書傳’ 2건으로, ‘書傳’ 대신 ‘書經’으로 되어 있는 표제는 없다. 장서 각 소장 29건의 고서에도 표제에 ‘書經’이 들어 있는 경우는 없다.

소장처	刊者	刊行年度
규장각	未詳	肅宗 年間?
중도	內閣	純祖 20년
규장각	嶺營	純祖 26년
규장각	慶尙監營	哲宗 13년
중도	內閣	19□□

된 언해 양식이며, 『주역언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문 전체를 一文一譯하는 한 편, 句讀와 懸吐의 정형화를 이룸으로써 언해의 전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문을 釋文에 沿用하여 경문의 본의가 자칫 손상되는 폐단을 경계했고,²⁷⁾ 『소학언해』와 달리 逐字譯에 충실하여 주석을 거의 완전히 배제하였다.²⁸⁾

교정청본 사서삼경언해의 극단적인 축자 직역은 七書의 朱註가 사회 저변에 확산된 전제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정청본 사서삼경언해의 경학적 특징을 꼽자면, 일차적으로 朱子의 四書章句集註와 『詩集傳』, 程伊川의 『易傳』과 주자의 『易本義』, 주자 제자 蔡沈이 師命으로 저술한 『書集傳』을 臺本으로 삼아 번역되어 주자성리학으로의 일원화된 사상적 집약을 꾀했다는 점이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대학장구』의 補亡章까지 포함하여 四書의 分章分節을 모두 한결같이 集註에 따랐다. 重出·衍文·誤字·錯簡 등의 판단도 전부 集註에 따라, 해당 經文의 音讀과 吐를 생략하거나 釋文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義例는 교정청본 사서언해가 주자의 집주를 대본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다.²⁹⁾ 마찬가지로 교정청본 『서전언해』도 『서집전』의 篇·章 구분을 똑같이 따랐고, 重出·衍文·誤字·錯簡 등의 經文 오류에 대한 판단도 철저히 『서집전』에 근거하였다.

현재 우리가 보는 『偽古文尚書』는 『今文尚書』 33편에 위작 25편이 첨가되어 총 5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唐나라 孔穎達의 『尚書正義』와 南宋 蔡沈의 『書集傳』은 『위고문상서』와 동일하게 58편을 虞書 5편·夏書 4편·商書 17편·周書 32편으로 分定하였다. 채침의 『서집전』은 또 그 58편을 아래 <표 1>과 같이 도합 887장으로 나누었는데, 교정청본 『서전언해』도 이와 전부 똑같이 分篇하고 分章하였다.

27) 이는 사서삼경언해가 經文과 釋文의 대응을 통한 경문의 정확한 이해를 궁극 목표로 한 것이다. 이영경, 앞의 논문, 11면 참조.

28)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80-81면 참조.

29) 위의 논문 ‘Ⅲ장 1절 체재의 구성과 언해의 원칙’ 참조.

〈표 1〉 『서집전』의 分篇 및 分章

『서집전』	虞書	夏書	商書	周書
篇, 章	堯典12 舜典28 大禹謨21 臯陶謨8 益稷11	禹貢106 甘誓5 五子之歌9 胤征7	湯誓4, 仲虺之誥9, 湯誥9, 伊訓8, 太甲上10, 太甲中7, 太甲下9, 咸有一德11, 盤庚上17, 盤庚中17, 盤庚下13, 說命中11, 說命中13, 說命中11, 高宗肅日5, 西伯戡黎7, 微子9	泰誓上11, 泰誓中9, 泰誓下6, 牧誓10, 武成9, 洪範40, 旅獒10, 金縢19, 大誥15, 微子之命5, 康誥24, 酒誥17, 桀戒8, 召誥24, 洛誥31, 多士26, 無逸19, 君奭23, 蔡仲之命8, 多方31, 立政24, 周官21, 君陳14, 顧命29, 康王之誥7, 畢命15, 君牙7, 閭命9, 呂刑22, 文侯之命4, 費誓5, 秦誓8
총58편 총887장	5편 80장	4편 127장	17편 170장	32편 510장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상서』를 학습하여, 漢唐유학에 기반을 둔 고려는 『상서정의』에, 주자성리학 사회인 조선은 『서집전』에 의거하여 『상서』를 각각 궁구했는데,³⁰⁾ 『서전언해』의 義例가 이처럼 『서집전』에 근거한 것은 조선전기 『서경』 해석에 있어 『서집전』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①重出: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주자가 중복되었다고 언급한 경문에 音讀하고 懸吐했지만 釋文은 두지 않았다. ②衍文: 또 사서언해는 주자가 연문으로 인식한 경문에 대해서는 音讀·吐·釋文을 모두 생략하였다.³¹⁾ 교정청본 『서전언해』도 사서언해와 마찬가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집전』이 重出이나 衍文으로 지적한 곳은 그 經文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다.³²⁾

30) 『상서정의』는 한당유학에서 상서학의 주교재로 널리 유통되었고, 『서집전』은 주자성리학 사회에서 상서학의 주교재가 되었다. 兩亂 이후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경향 아래, 尚書學에도 『서집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당유학을 일부 수용하는 독자적인 경전 해석의 흐름이 나타났으나, 그때도 상서학의 주교재는 여전히 『서집전』이었다.

31) 重出과 衍文의 처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정청본 사서언해가 중출과 연문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구분지었다는 점이다. 율곡본은 ①重出이든 ②衍文이든 음독·토·석문을 모두 생략하였다. 重出은 경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衍文은 무언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교정청본은 重出과 衍文을 차별하여, 중출보다 연문의 經文으로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하향 평가하였다.

32) 한편, 署文에 대해서는 경문 자체가 없으므로 그것을 표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율곡본과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주자가 궤문이 있다고 한 대목에 평소와 다름없이 음독·토·석문을 모두 두었다. 『서전언해』도 〈仲虺之誥〉 3장과 〈梓材〉 5장을 보면, 署文에 있

『서경』「虞書」〈舜典〉24장: 帝曰 “(중략) 神人以和. 變曰於予擊石拊石百獸率舞”

『서전언해』: 帝曰 “(중략) 神人以和호리라” [*變曰~率舞는 삭제됨]

『서집전』註: ‘變曰’ 이하는 소씨가 “(중략) 이는 〈의직〉의 글이니, 簡編의 脫誤되어 여기에 다시 나온 것이다” 하였다.³³⁾

『서경』「虞書」〈堯典〉10장: 帝曰 “吁 靜言庸違 象恭滔天”

『서전언해』: 帝曰 “吁이라 靜言庸違하고 象恭호니라” [*滔天 삭제]

『서집전』註: ‘滔天’ 2자는 미상이다. 下文과 비슷하니 잘못이 있나 의심된다.³⁴⁾

〈표 2〉『서전언해』의 重出과 衍文 처리

	율곡본 사서언해	교정청본 사서언해	교정청본 『서전언해』
①重出	經文(○) 音讀(x), 吐(x), 釋文(x)	經文(○) 音讀(○), 吐(○), 釋文(x)	經文(x) 音讀(x), 吐(x), 釋文(x)
②衍文	經文(○) 音讀(x), 吐(x), 釋文(x)	經文(○) 音讀(x), 吐(x), 釋文(x)	經文(x) 音讀(x), 吐(x), 釋文(x)

③誤字: 『大學』傳7장 1절 “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懥 則不得其正”에 대해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程子曰 身有之身當作心”이라 주석하였다. 이에 율곡본은 경문 ‘身’을 원음대로 ‘신’이라 음독하고 “身有之身當作心(심)”이라 分註했으며 “心의”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교정청본은 경문 ‘身’자 아래에 바로 ‘심’이라 음독하고 분주 없이 “묘음애”라고 해석하였다. 율곡본은 경문의 한자음을 훼손하지 않은 채 주석을 달아 오류를 밝혔고, 교정청본은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오자 ‘身’의 음을 바로 ‘심’으로 대체하였다. 교정청본 사서언해의 오자 처리 원칙은 대개 이와 같다. 『서전언해』도 『서집전』이 오자로 본 경문에 대해서는 사서언해처럼 비록 경문을 고치지는 않되 그 원음을 바로 버렸다.

『서경』「周書」〈金縢〉18장: “(중략) 惟朕小子其新逆 我國家禮 亦宜之”

『서전언해』: “(중략) 惟朕小子其新(친)逆 我國家禮 亦宜之” [*釋文: 친히]

『서집전』註: ‘新’은 의당 ‘親’이 되어야 한다. (중략) 살펴보건대 鄭氏의 『詩傳』에

어서는 사서언해처럼 별다른 표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3) 『서집전』「虞書」〈舜典〉24장 주 “變曰以下 蘇氏曰 ‘(중략) 此益稷之文 簡編脫誤 復見於此’”

34) 『서집전』「虞書」〈堯典〉10장 주 “滔天二字 未詳. 與下文相似 疑有舛誤”

“成王이 金縢의 글을 얻고는 周公을 親迎했다” 하였다. 鄭氏의 학문은 伏生에게서 나왔고, 이 篇은 伏生이 전한 바이니, 마땅히 ‘親’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 ‘親’을 ‘新’으로 잘못 쓴 것은 바로 『대학』에서 ‘新’을 ‘親’으로 잘못 쓴 것과 같다.³⁵⁾

④錯簡：율곡본 사서언해는 착간된 경문을 그대로 적되, 그 구절 끝에 分註하여 어디가 어떻게 착간되었는지를 밝힌 뒤, 釋文에서 착간을 바로잡아 해석하였다. 하지만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분주 없이 경문은 본래 순서대로 적되 석문은 순서를 바로잡아 풀이하였다. 교정청본은 어쩔 수 없이 주석을 붙여야 할 곳에만 분주를 두고 나머지는 생략했는데, 이는 사서집주에 대한 의존도가 율곡본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착간을 분주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장·절 내에서의 착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³⁶⁾ 『서전언해』도 하나의 장·절 내에서의 착간은 사서언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서전언해』는 重出·衍文의 경우처럼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서집전』이 착간으로 명시한 곳은 경문 순서 자체를 아예 과감히 수정해버렸다.

『서경』「虞書」〈舜典〉8장: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 望秩于山川 肆觀東后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倏五禮 五玉三帛二生一死贊 如五器 卒乃復.

『서전언해』: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 望秩于山川 肆觀東后 五玉三帛二生一死贊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倏五禮 如五器 卒乃復. [*경문 순서 변경]

『서집전』註: 이 9자는 마땅히 ‘肆觀東后’ 아래와 ‘協時月正日’ 위에 있어야 하는데, 誤脫되어 여기에 있는 것이니, 동쪽 제후를 만나볼 때 모두 이 예물을 잡음을 말한 것이다.³⁷⁾

『서경』「周書」〈康誥〉10장: (중략) 非汝封 又曰 “劓刑人 無或劓刑人”

『서전언해』: (중략) 又曰 “非汝封 剗刑人 無或劓刑人” [*경문 순서 변경]

『서집전』註: ‘又曰’은 마땅히 ‘無或刑人殺人’ 아래에 있어야 한다.³⁸⁾

35) 『서집전』「周書」〈金縢〉18장 주 “新 當作親. (중략) 按鄭氏詩傳 ‘成王既得金縢之書 親迎周公.’ 鄭氏學出於伏生 而此篇則伏生所傳 當以親爲正. 親誤作新 正猶大學 新誤作親也.”

36) 『論語』「顏淵」10장 3절 “誠不以富 亦祇以異”와 「季氏」12장 2절 “其斯之謂與”的 경우에는 착간된 구절과 바로잡을 위치가 篇을 달리하기에 교정청본도 할 수 없이 분주를 달았다.

37) 『서집전』「虞書」〈舜典〉8장 주 “此九字 當在肆觀東后之下 協時月正日之上 誤脫在此, 言東后之觀 皆執此贊也.”

〈표 3〉 『서전언해』의 誤字와 錯簡 처리

	율곡본 사서언해	교정청본 사서언해	교정청본 『서전언해』
③誤字	經文(그대로 둠) 音讀(경문대로), 釋文(수정)	經文(그대로 둠) 音讀(수정), 釋文(수정)	經文(그대로 둠) 音讀(수정), 釋文(수정)
④錯簡	經文(그대로 둠), 分註(○) 釋文(수정하여 해석)	經文(그대로 둠), 分註(×) 釋文(수정하여 해석)	經文(수정), 分註(×) 釋文(수정하여 해석)

經文은 聖人의 말씀으로 한 글자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권위를 갖는다. 그럼에도 『서전언해』는 사서언해와 달리 『서집전』이 重出·衍文·錯簡으로 판단할 경우 과감히 經文 자체에 손을 대었다.³⁹⁾ 사서언해가 重出일 경우 音讀·吐는 두되 釋文을 두지 않은 것은 충출의 經文으로서의 가치를 한 단계 하향 평가한 것이며, 衍文에 音讀·吐·釋文을 다 두지 않은 것은 연문의 經文으로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낮춘 것이다. 이러한 언해 체재는 朱子와 集註가 절대적인 권위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一例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서전언해』는 重出·衍文·錯簡의 경문조차 모두 수정하였다. 이는 교정청본 『서전언해』가 사서언해와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도 오류로 보이는 경문의 經文으로서의 가치를 더더욱 하향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8) 『서집전』「周書」〈康誥〉10장 주 “又曰 當在無或刑人殺人之下.”

39) 다만 『서전언해』도 章 전체나 篇 전체를 옮겨야 하는 차간일 때는 경문 순서를 바로잡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分註도 없어, 해당 篇·章의 차간 여부가 『서전언해』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篇·章까지 임의로 재편하는 일은 감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서집전』은 〈禹貢〉83장이 81장과 82장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서전언해』는 81-83-82장으로 수정하지 않고 본래 경문의 순서 그대로 배열하였다. ②『서집전』은 〈舜典〉10장이 4장을 죄준 일보다 앞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吳氏의 설을 인용했으나, 『서전언해』는 〈순전〉10장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③『서집전』은 〈武成〉총 9장에 대해 編簡이 錯亂하여 2~9장의 순서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순서를 1-6-8-2-4-3-5-7-9장으로 考正하였다. 하지만 『서전언해』는 〈무성〉의 경문 순서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④『서집전』은 〈康誥〉1장이 〈洛誥〉의 글이니 〈낙고〉1장 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서전언해』는 그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⑤『서집전』은 〈梓材〉8장에 대해서도 〈梓材〉3장의 말 때문에 잘못 編定되었다고 했으나, 『서전언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⑥『서집전』은 「주서」의 〈康誥〉〈酒誥〉〈梓材〉는 〈金縢〉앞에 와야 하고, 〈蔡仲之命〉은 〈洛誥〉앞에 와야 한다고 했지만, 『서전언해』는 그에 대한 아무런 표식을 두지 않았다.

『서경』은 儒經 중 진위논쟁이 제일 뜨겁고 闕誤와 錯簡도 많아 해석하기가 매우 힘든 경전이다. 『위고문상서』 58편 중 25편이 偽書라는 사실은 청나라 고증학자 閻若璩의 『古文尙書疏證』에 의해 결정적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공영달의 『상서정의』와 채침의 『서집전』도 비록 『위고문상서』 전체를 경문으로 인정하고 주석했으나, 25편의 위작 여부를 일정정도 의심하였다.⁴⁰⁾ 『상서』 중 일부가 偽書라는 의심은 宋代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주자 역시 이에 대해 의심했기 때문이다.⁴¹⁾ 그의 문인 채침도 『서집전』에서 총 58편의 『금문상서』 수록 여부를 일일이 밝혀두었다.

이와 같이 『서경』은 난삽하여 읽기 어렵고 해석에 이견도 많아, 58편 중 일부는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제대로 강독하지 않았다.⁴²⁾ 교정청본 『서전언해』가 사서언해보다 오류로 보이는 경문을 더욱더 내려 응시한 것은, 바로 『서경』이란 텍스트에 내재된 이런 원천적인 문제점에서 연유한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서전언해』가 경문의 오류를 모두 『서집전』대로 판단한 것은 『서경』 언해에서 『서집전』의 의존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다.⁴³⁾

40) 공영달은 梅贊의 『고문상서』가 偽書임을 경험하는 증거들을 『상서정의』에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양현정, 2012 「다산 정약용의 상서 연구와 『매씨서평』」,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면 참조.

41) 주자는 『고문상서』의 書序와 孔傳을 회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後人들의 위작을 변별하기 시작하는 선구가 되었다.: 劉國忠, 2008 「『尙書』와 朱子의 政治觀」 『율곡사상연구』 17, 142면.

42) 『태종실록』 권3, 2년 6월 8일 庚申 “命戶曹典書金瞻講書梓材篇. (중략) 瞻不能句讀 愧謝曰 ‘今之儒生 以禹貢梓材不切於學 皆不讀.’” / 『정종실록』 권4, 2년 4월 6일 辛丑 “中樞院事全伯英言於上曰 ‘人君之學 莫如尙書 然五誥盤庚禹貢等篇 有佶屈難讀處 不必進講也. (중략) 上然之.’” / 趙翼, 『浦渚集』 권7, 「疏」 <進書經淺說疏[乙未]> “蓋書中所記 如禹貢 甘誓盤庚大誥多方等篇 只記一時命令事爲者 於治道 非大有所關.”

43) 조선시대 실록이나 여타 문헌들을 살펴보면, 『시경』의 언해는 『시경언해』라 하기도 하고 『시전언해』라 하기도 했지만, 『서경』 언해에 대해서만은 출곧 『서경언해』가 아니라 『서전언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서경』 경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데다 諸說까지 분분하니, 이 언해서가 특히 『서집전』에 입각한 것임을 명시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2) 상황 논리에 입각한 존대법⁴⁴⁾

교정청본 사서삼경언해에는 凡例나 跋文이 없어 어떤 원칙에 따라 사서를 언해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언해서 본문을 고찰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편찬 원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언해 체재의 義例 및 語法 구사 방식이다.

옛날에는 2吏가 있어, 左史는 王의 言을 기록하고 右史는 王의 行을 기록하는데, 王의 行을 기록한 책은 『춘추』요, 王의 言을 기록한 책은 『서경』이다.⁴⁵⁾ 이처럼 『서경』은 年月日時로 서술된 일반 史書와는 달리 聖·賢君과 聖·賢臣의 言辭 위주로 편찬되었기에, 『서경』을 언해할 때는 語法을 해당 상황에 가장 알맞게 구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서경』「虞書」〈臯陶謨〉8장: 臯陶曰 “朕言惠 可底行” 禹曰 “俞 乃言 底可績”

『서진언해』: 臯陶曰 “朕言惠호야 可底행이리이다” (하략)

김종정: 蔡傳의 說이 본디 심히 밝지 못하여 언해가 이에 “朕言惠호야 可底行이니이다”라 하니, 이는 臯陶가 自讚하는 말로 여긴 것이다. 君臣上下가 교대로 서로 勉戒하는 때에, 고요가 應하지 않고 이처럼 自讚하니 (중략) 특히 의심스럽다.⁴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그 言辭가 누구의 말인지 누구와 어떻게 대화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경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매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또 경문을 존댓말로 번역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君臣의 대화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존대하는 어법으로 언해하였다. 이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에, 교정청의 경서언해는 일단

44) 이 절은 유영옥, 2016 「校正廳本 『書經諺解』의 존대법」 『東洋漢文學研究』 44의 내용을 요약 보충한 것이다.

45) 『禮記』「玉藻」“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 / 『태종실록』 권25, 13년 1월 16일 丙申 “司憲府上疏曰 ‘古者 天子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 事爲春秋 言爲尚書. (하략)’”

46) 金鍾正, 『雲溪漫稿』「箚錄:書傳」〈臯陶謨〉8장 ‘朕言惠可底行’ “蔡傳說 既未甚明 而諺解乃曰 ‘朕言惠호야 可底행이니이다’ 是以此爲臯陶自讚之辭也. 君臣上下 交相勉戒之時 臯陶不應 如是自讚 (중략) 殊可疑.”

상황 논리에 입각한 존대법 구사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사서언해는 君臣 간의 대화가 아닐 경우, 聖君인 堯·舜·禹·湯·文·武王을 제외하고 齊景公·衛靈公·梁惠王·滕文公 등 일반 군주의 行에 대해서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에 曾子에게 존대하고 孔子와 諸侯의 대화에서 제후를 압존하여 공자를 상대적으로 높였다.⁴⁷⁾ 이는 堯舜에서 孔子-曾子-子思-孟子로 이어지는 儒家 道統論이 사서언해의 존대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이와 사뭇 다르다. 『서경』에 등장하는 天子는 堯·舜, 夏나라 禹·啓·太康·仲康, 商나라 湯王·太甲·盤庚·高宗·紂王, 周나라 武王·成王·康王·穆王 및 東周 平王인데, 『서전언해』는 聖·賢을 따지지 않고 堯舜~武王의 여섯 聖君은 물론, 經文에 나오는 거의 모든 天子들의 言·事에 대부분 높임말을 사용하였다.孔子가 編定한 『서경』은 원래 중국 上古시대 史官이 작성한 當代史를 기록한 글이므로, 史官이 天子의 言·事를 追述하는 대목에서는 존댓말로 언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서전언해』는 三代의 天子 중 惡行으로 폐위된 夏 太康과 폭군 桀紂에게는 존대하지 않되, 폐위 이전 君臣 간의 대화일 때는 폭군에게도 그대로 존대하였다. 이처럼 『서전언해』는 철저히 상황 논리에 입각하여 매 경우마다 복잡다단하게 언해되었다.

즉 사서언해는 유가의 도통론을 존대법 구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설정했지만, 『서전언해』는 經이자 史라는 이중성 때문에 上古의 史官이 당대사를 서술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상황 논리에 입각한 존대법 원칙이 제일 중요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교정청본 『서전언해』와 사서언해의 제일 큰

47) 예를 들면 『論語』「爲政」19장에 나오는 “哀公問曰”과 “孔子對曰”은 “哀公이 묻자와 골오더”와 “孔子 | 對하야 골으샤더”로 언해하였다. 물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있어서는孔子가 哀公에게 존대하는 君臣 간의 대화법으로 언해하였다.

48) 유영옥, 2009 『校正廳本 四書諺解의 존대법과 道統論』『大東漢文學』 31 참조.

49) 正祖, 『弘齋全書』 권93, 「經史講義 30: 書經 1」〈牧誓〉 “李益運이 대답하기를 ‘史法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紀事·制誥·追述입니다. ‘왕이 이와 같이 말했다[王若曰]’는 制誥의 문체이며, ‘글을 지어 고한다[作書以誥]’는 紀事의 문체입니다. ‘王若曰’이나 ‘作書以誥’라 말하지 않고 직접 당시의 일을 서술해가는 것은 사관이 미루어 서술한[追敘]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차이점 중 하나다.

아울러 『서전언해』는 唐虞三代의 君臣들이 자국의 先哲王뿐만 아니라, 勝國의 先哲王을 언급할 때도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前代의 선철왕을 후대의 다른 나라가 존대하는 어법에는 時王이 前代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또 『서전언해』는 요순삼대 신하들 중 周公에게만 존대하여⁵⁰⁾ 도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東方 도통의 시발점인 箕子를 존중하는⁵¹⁾ 어법까지 구사하였다.

이로 보면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어법은 상황 논리를 우선하되, 한편으로는 사서언해와 매한가지로⁵²⁾ 王統 · 道統 · 家統으로 대별되는 성리학적 正統論도 수렴한 것이다.

4. 『서전언해』의 경문 해석

1) 『書集傳』 준용 및 小註 · 古註 수용

사서언해가 사서집주를 遵用하여 定本化함으로써 집주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사서 이해의 틀을 결정적으로 확립했듯이, 『서전언해』도 언해의 형식적 측면과 함께 경문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서집전』을 충실히 따라 언해하였다.⁵³⁾

50) 『서전언해』는 堯舜~周公의 道統 흐름에서 홀로 天子가 되지 못한 周公을 다른 聖君과 동일하게 존중하여, 君臣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제외하고는 주공의 言 · 事를 모두 높였다. 이는 『서경』 經文에 등장하는 天子가 되지 못한 신하로서는 유일한 경우다.

51) 殷有三仁의 한 사람인 箕子는 武王에게 흥법 9주를 轉述한 聖賢이다. 또 우리 입장에서 箕子는 한반도에 중화문화를 짜트게 한 동방 도통의 시발점이며, 檀君-箕子-衛滿의 3조 선 체계로 연속해오는 유구한 史的 정통 위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교정청본 『소학언해』는 「稽古」 22장에서 箕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서전언해』는 「周書」 <洪範>에서 武王과 箕子가 상호 존대하지 않는 대화법으로 언해하여 마치 기자와 무왕을 동급에 놓은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52) 존대법에 있어서는 교정청본 『소학언해』도 사서언해와 동일하다.

53) 『서경』이 사서에 인용된 경우, 『서집전』의 주석과 사서집주의 주석이 다르면, 원칙적으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集註의 설명이 경문을 번역하는 지침으로 부족할 때, 大全本 小註나 여타의 朱註를 참고하여 자신들 나름의 사유로 경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集註와 小註의 근거가 미비할 때는 古註를 취사하여 경문을 번역하거나, 때로는 朱註가 존재하는데도 古註를 선택하여 경문을 언해하였다.⁵⁴⁾

『서전언해』도 臺本인 『서집전』의 蔡註가 경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蔡註의 설명이 모호하여 불명확할 때, 사서언해와 마찬가지로 大全本 小註를 채택하거나 孔安國의 傳 및 孔穎達의 疏 등을 활용하였다. 『서전언해』는 그 명칭이나 언해 체재로 보아 臺本에 대한 의존도가 사서언해보다 더 심하지만, 그렇더라도 58편 887장이나 되는 많은 경문을 오직 『서집전』에만 의존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서전언해』도 사서언해처럼 諸說을 통합 절충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蔡註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

- ① 蔡傳은 唐虞의 典獄이 아무런 私心 없이 法을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諸家의 小註들은 穀王이 범범히 경계할當時의 典獄으로 보았다. 언해는 小註의 뜻을 따랐는데 (중략) 蔡傳의 뜻이 나온 것 같다.⁵⁵⁾
- ② 〈立政〉 1편은 모두 周公이 成王에게 고하는 말인데, 그 마지막에 특별히 ‘太史 야’라고 불러 문장을 시작했다. (중략) 陳雅言(1318~1385)은 “비록 太史에게 말하지만 실은 王에게 고하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언해의 定讀은 대개 그 설을 썼다.⁵⁶⁾
- ③ 요약: 古經에는 〈우공〉 99장 “錫土姓”과 100장 “祗台德先 不距朕行”이 하나로 연결되어, 孔傳과 孔疏는 100장의 ‘台’와 ‘朕’을 모두 王者[天子]로 보았고, 蔡傳도 이에 가까운 듯하나 분명치 않다. 『서전언해』는 小註의 王氏 설을 따라 ‘台’와 ‘朕’을 모두 禹로 보았는데, 이는 孔傳과 蔡傳의 뜻이 아니니, 개정해야 할 듯하다.⁵⁷⁾

로 『서전언해』는 蔡傳에 입각하여 언해되고, 사서언해는 집주에 입각하여 언해되었다. 이는 교정청본 경서언해서가 각각 臺本으로 삼은 텍스트를 遵用한 일례이기도 하다.

54)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IV. 교정청본 사서언해의 경학적 특질’ 참조.

55) 犀槩, 『市南集』 권16, 『雜著』 〈讀書瑣說[260條]〉 「周書」 〈呂刑〉 ‘典獄 非訖于威 惟訖于富’ “蔡傳 作唐虞典獄盡法無私看, 諸家小註 作穆王泛戒當時典獄看, 謬解從小註意 (중략) 蔡傳意似長.”

56) 洪奭周, 『尙書補傳』 〈立政〉 24장 “立政一篇 皆周公告成王之辭也, 而其卒也 特呼太史以起之. (중략) 陳氏雅言謂 ‘雖告太史 而實以告之於王’ 今諺解之讀 盖用其說.”

④ 諺釋은 註釋에 조금 위배되는데, 대개 小註의 朱子 제2說의 뜻을 따른 것이다.⁵⁸⁾

- ① 살펴보건대 孔傳에는 '用命' 아래에 '故'자 한 글자를 붙였고, 孔疏에는 또 '用命之德'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蔡傳은 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언해는 도리어 古傳을 사용했다. 孔疏의 뜻은 의심스럽다.⁵⁹⁾
- ② 공안국의 傳은 “殷을 쳐서 죽인다” 하였고, 공영달의 疏는 “誅殺의 방도로 殷에 무력을 사용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는 '戎'을 '兵'으로 풀이한 것이니, 대개 〈泰誓〉의 '戎商'과 같다. 蔡傳은 '戎'을 '大'으로 풀이한 듯한데, 언해는 도리어 孔傳과 같이 해석했으니, 옳은 듯하다.⁶⁰⁾
- ③ 살펴보건대 '寧人'은 단지 '寧王·寧考'와 같은 뜻이니, 孔傳이 올바르다. 그런데 蔡傳은 홀연히 바꾸어 '大臣'으로 해석했으니 괴이하다. (중략) 그 '圖功攸終'을 해석한 것도 잘못되었다. 지금 언해는 도리어 바르게 해석했다.⁶¹⁾
- ④ 살펴보건대 '我'자는 '古后'에 속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蔡傳의 해석은 그렇지 않은데, 언해가 따르지 않고 '我的 古后'로 해석하여 도리어 올바르게 되었다.⁶²⁾

물론 교정청본 사서언해나 『서전언해』가 小註나 古註를 채택한 경우는 많지 않다.⁶³⁾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⁶⁴⁾ 왜냐면 16C 후반 尊朱子

57) 金鍾厚, 『本庵集』「箚錄:書傳」〈禹貢〉100장 “按此節 古經連上文爲一節, 而孔傳曰‘(中略) 王者 常自以敬我德爲先 則天下無距違我行者.’ 疏曰‘(中略) 又天子 常自以敬我德爲先 則天下無距違天子所行者 皆禹之使然.’ 今傳意若近此 而殊欠明. 小註馬氏爲分曉 而王氏以台朕皆屬禹 則非古今傳之義. 諺解却從王爲釋 恐合改正.”

58) 朴文鎬, 『楓山記聞錄』「經說:尙書」〈召誥〉20장 ‘王其德之用 祢天永命’ “諺釋 稍違於註釋 盖從小註朱子第二說意也.”

59) 金鍾厚, 『本庵集』「箚錄:書傳」〈堯典〉12장 ‘汝能庸命’ “按孔傳 於用命下 著一故字, 而疏 又有用命之德語, 此恐未爲得. 蔡傳不從 而今諺解 却用古傳. 疏意可疑.”

60) 金鍾厚, 『本庵集』「箚錄:書傳」〈康誥〉4장 ‘殮戎殷’ “孔傳曰‘殺兵殷.’ 疏曰‘以誅殺之道 用兵于殷.’ 按此訓戎以兵 盖與泰誓戎商同也. 今傳似訓戎以大 而諺解却如孔傳釋 恐是.”

61) 金鍾厚, 『本庵集』「箚錄:書傳」〈大誥〉10장 ‘予曷其不于前寧人圖功攸終’ “按寧人只與寧王寧考同義, 孔傳正爾. 今傳之忽變作大臣解 可怪. (중략) 其解圖功攸終者 亦誤. 今諺解却得.”

62) 金鍾厚, 『本庵集』「箚錄:書傳」〈盤庚中〉4장 ‘曷弗念我古后之間’ “按我字 恐屬之古后爲是 傳解未然 諺解不從 而以我古后爲釋 却得之.”

63) 어느 대목에서 小註나 古註를 선택했으며 독자적으로 변용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후일로 미룬다.

64) 조선시대 일부 『상서』 주석이 채침이나 주자의 성리학적 주석 범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상서정의』의 수용으로 가능했는데, 尹鑄나 朴世堂이 『상서정의』 인용에 제한적이

의 분위기 속에서 교정청본 사서언해가 集註를 준용했으나 교조적으로 맹종하지는 않았고, 『서전언해』 역시 蔡傳을 준용했으나 그것만 획일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퇴계·율곡의 경서언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C는 주자를 맹신하는 사회가 아니었기에, 그 점이 교정청본 경서언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는 수십 명의 석학들이 한데 모여 최고의 定本을 마련하는 官撰의 언해에서 기실 당연히 창출될 만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교정청본 경서언해서는 성립과 동시에 한 시대의 전형이 되어 급속도로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 책은 조선후기 내내 定本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수행하며, 획일화의 폐단을 초래할 정도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다고 해서 교정청본 경서언해서에 비판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서전언해』도 蔡傳을 준용하며⁶⁵⁾ 小註와 古註까지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무척 노력했지만, 조선후기 학자들로부터 그 잘잘못을 꾸준히 지적 받았다.⁶⁶⁾ 이 부분에서 사서언해와 『서전언해』의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서전언해』에 대한 활가활부에는 理氣·心性 등을 거론하는 철학적 논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⁶⁷⁾

『서경』은 德治를 강령으로 제시한 정치이론서이자 上古의 통치제도를 수록한 典章文物 지침서이기에, 『서전언해』는 君道나 臣道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德治에 관한 철학적 사유는 간혹 보여주어도,⁶⁸⁾ 理氣·心性 등의 성리철학 개념에 대한 논변은 애초에 不在한다. 이에 『서경』의 주석가들도 字句의 정확한 訓義와

었던 반면, 李灝은 조선시대 『상서』 주석에 있어 처음으로 『상서정의』를 적극 수용하였다는. 김만일, 2007 「李灝의 尚書 解釋 研究」 『儒教思想研究』 28, 29면; 2009 「本庵 金鍾厚 尚書論의 성격: 기준 주석서의 수용과 비판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6, 144면 참조.

65) 金鍾正, 『雲溪漫稿』「箋錄:書傳」〈堯典〉 12장 “按諺解 雖以傳說爲主 錯看誤解者 甚多.”

66) [한국경학자료집성] 중 『서경』 관련 저술은 161종인데, 거기서 『서전언해』를 언급한 저술은 19종이다. 그 외 史書와 [한국문집총간] 속 몇몇 문집에도 『서전언해』를 언급한 글이 있다.

67) 주해를 제외하고 경문만 번역하면 거기에 어떤 철학적 思惟가 내재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도 그러하다. 하지만 사서언해는 『논어』의 從心所欲, 『맹자』의 平旦之氣·四端 擴充·存心, 『대학』과 『중용』의 累矩·率性·慎獨 등 몇몇 대목에서는 성리철학에 대한 일단의 사유를 엿볼 수 있다.

68) 예를 들면 『서석의』에서 퇴계가 〈湯誥〉 2장 ‘克綏厥猷’에 대해 논변한 내용.

文意의 파악 및 역사·지리·제도 등의 고증 문제를 주로 거론하였고,⁶⁹⁾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잘잘못을 따질 때도 句讀를 잘못 끊었다는 언급을 대개 많이 했으며, 文意의 파악이 미흡하다거나 文勢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若·時·惟·越·於·率·殷자 등의 訓義 문제도 간간히 거론하였다. 또 『서경』의 내용이 言辭 위주이다 보니, 말하는 주체와 말하는 대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들도⁷⁰⁾ 눈에 띄어 흥미롭다.

2) 기존의 通說 준수

선조 중반 교정청의 경서언해 목표는 첫째 주자성리학에로의 사상적 귀일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 世傳하는 紛紜한 諸說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定說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천명한 조선 사회가 지향하는 바이고, 후자는 16C 경서언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동안의 난제였다.

諸家의 학설을 두루 살펴 가장 적절히 언해하는 일은, 선조조 官撰 경서언해 사업의 출발점인 미암 유희춘도 하고자 했으며,⁷¹⁾ 퇴계의 경서석의와 율곡의 사서언해 또한 일찍이 지향했던 바이다. 그런데 교정청은 諸說의 大旨가 臺本을 벗어나지 않는 한 기존의 설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선조도 옛사람의 주석을 함부로 고치지 말고 부득이 수정해야 할 곳만 고치기를 당부했는데,⁷²⁾ 이는 교정청의 경서언해에 당대 경학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수렴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69) 의리 분변에 대한 논의거리는 더러 존재하나, 축자 직역에 경문을 연용하는 언해 방식에 서는 그에 대한 사유가 드러나기 어렵고, 역사·지리·제도의 고증 문제도 언급되기 어렵다.

70) 愈肅基, 『兼山集』「箇疑:書傳下經」〈顧命〉 12장 ‘命作冊度’ “是時 康王未受顧命 則命 猶是召公命也. 諺解 於此獨以旱事爲吐 若以此爲康王之命者, 然恐誤.” / 金龜柱, 『經書箇錄』〈召誥〉 14장 ‘王厥有成命 治民今休’ “此二句 亦併是周公之語. (중략) 傳解及小註諸說 皆然 而諺解 劃下二句爲召公之言 恐失照勘.”

71) 柳希春, 『眉巖日記』 선조 7년 12월 1일 “又啓曰 ‘臣頃受四書諸經吐釋詳定之命 當廣聚衆說. 雖臣遞此職之後 請就玉堂 依李滉西銘會議例 議于玉堂諸臣 然後臣居間凝思 以決取舍庶乎小錯矣.’ 上皆稱善 從之.”

72) 『선조실록』 권142, 34년 10월 19일 癸未: 권162, 36년 5월 13일 戊辰: 권8, 7년 10월 25일 丙寅.

교정청이 諸說을 商確하는 과정에서 퇴·율의 경서언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느 경문의 어느 대목에서 퇴·율의 학설을 선택하는가는 정해진 법칙이 없었다. 단지 퇴·율의 견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경문의 본의를 가장 잘 형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과 변용만이 있었을 뿐이다.⁷³⁾

안타깝게도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경우에는 퇴·율의 언해를 대조 비교하는 방법을 쓸 수 없었다. 율곡은 사서언해만 완료하고 삼경언해는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청으로 하여금 퇴계의 『書釋義』를 가일충 중시하게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리어 퇴계의 독자적인 견해를⁷⁴⁾ 대부분 채택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연출시켰다.⁷⁵⁾ 『서석의』 총 633조목 중에는 〈표 4〉와 같이 “多數의 說은 이러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목이 몇몇 존재한다.⁷⁶⁾ 이러한 조목들을 살펴보면, 『서전언해』는 거의 대부분 퇴계설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通說을 선택하였다.⁷⁷⁾

73) 교정청본 사서언해와 퇴·율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이 점이 제일 돋보인다. 다만 교정청본의 철학적 자유를 추심하면 퇴계의 학설과 다분히 동질적이다.: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194면.

74) 이은호는 『서석의』가 대개 『서집전』의 옮바른 이해에 바탕을 두지만, 『서집전』의 주석과 상이한 ‘독창적 해석’도 총 14곳 보인다고 했는데, 거기서 『서전언해』가 퇴계설을 따른 곳은 3조목뿐이다.: 이은호, 2014 「조선 전기의 書經學과 書釋義」 『국학연구』 25, 129면 〈표 2. 채주蔡注와 다른 해석을 보인 서석의書釋義 조목〉 참조.

75) 혹여 율곡의 『서경』 언해가 있고 또 해당 조목에서 퇴계의 견해와 동일하게 언해했다면,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기준설을 따르지 않고 퇴계의 독자적인[율곡도 동의한] 견해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76) 『서석의』에는 통설인 듯한 해석과 다르게 언해된 부분이 〈표 4〉 외에도 더 있다. 다만 〈표 4〉 중 일부는 퇴계가 長文의 설명을 붙여 놓아 특히 중요할 듯하다.

77) 이은호, 2011 『朝鮮前期 書經 解釋 研究: 陽村과 退溪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5-165면 〈표 9. 書釋義 총 633조목 세부 분석표〉에서, 필자가 해아려보니 『서석의』 633조목 중 기준의 여러 언해를 나열하고 그 중에 무엇이 옳다고 단정한 ‘언해 판단’ 조목은 총 181개(虞書25, 夏書12, 商書38, 周書106)인데, 퇴계의 단정이 『서전언해』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는 76조목이고, 다른 경우는 105조목이었다.

〈표 4〉 퇴계설과 통설

	章·句	서석의	서전언해	채택	서집전
1	臯陶謨1 慎厥身修	①慎하야 그 身을 修호며 ②그 身을 修호되 慎하며 ③그 身을 慎하야 修호며 *按恐當云 “身은 修호를 삼가하며”	①慎하야 그 身을 修호며	통설	없음
2	臯陶謨3 (乃言曰) 截采采	①采采를 截호미니이다 ②截호매 잇느니이다 *今按兩說 皆未穩 當云 “采采를 截하느니 훌디니이다”	①采采를 截홈이니이다	기준	기준, 퇴계
3	臯陶謨7 天聰明自我民 聰明	아래 설명	아래 설명	통설	모호
4	湯誥2 克綏厥猷	①能히 그 獻에 綏하느니사 ②흐리사 后니라 *當改曰 “克綏厥猷는 惟后니라” 可也。 今吐曰 “克綏厥猷사 惟后” 故釋者之說 亦依是而云云 此非說者之誤 乃當初訓 吐之誤也。	토: 克綏厥猷 사 惟后 니라 ②能히 그 獻에 綏 케 흐리사 后 니라	기준	없음
5	盤庚上9 若網在綱	①綱이 綱이 이셔사 *按三釋同此 (중략) 當云 “綱에 이셔 사” 更詳之。	①綱이 綱이 이셔사	통설	없음
6	盤庚中4 曷弗念我古后 之聞	①汝는 엇데 我를 古后의거며 聞흔 事 를 念티 아닌느뇨 ②내의 后 聞으로 ○ 듣는 주를 念티 아닌느뇨 ③엇데 우리 古后로 聞호를 念티 아니 / *三說 皆不 甚的 憲當云 “汝는 엇디 我를 古后의 聞하는 일로 念티 아닌느뇨”	너는 엇디 우리의 古后的 聞음을 念티 아니하느뇨	독자?	모호
7	說命(中)6 慮善以動 動惟厥時	①慮 善커든 떠 動호샤티 動호매 그時 로호쇼서 ○그 時를 惟호쇼서 *今按慮善之訓 欽世守此 (중략) 故此 訓 當改之曰 “慮를 善히하야 ○慮 善 케 하야” / *惟字 或釋或不釋 以文勢觀 之 不釋爲當。	①慮 善커든 떠 動 호샤티	통설	모호
8	說命(中)13 王忱不艱	①王이 忱하야 艱히 너기디 아니호시면. 今按諸釋同 *當改曰 “王忱호시면 不艱이라” 釋曰 “王이 忱호시면 艱티 아닌디라”	토: 王忱不艱호시면 / ①王이 忱하야 艰 티 아니호시면	통설	모호
9	大誥2 敷貢	①敷호야 貢호며 今按 諸釋同此. *當云 “貢을 敷호며”	토: 敷貢호이 / ①敷 호야 貢호며	통설	모호
10	大誥10 曷其不于前寧 人圖功 攸終	①前寧인의 圖功에 終호 배 아니호리오 *今按 此吐與釋 皆非. 當改吐曰 “前寧 人에 圖功攸終호리오” 釋曰 “前寧人에 功을 終호 바를 圖티 아니호리오”	토: 曷其不于前寧人 圖功에攸終호리오 ①엇디 그 前寧인의 圖호 功에 終호 바 를 아니호리오	기준	퇴계쪽

11	康誥24 往哉封	①往호는 封아 ②往호디어다. *世多從首說 愚以爲末也. (중략) 當從 第二說.	①往호는 封아	통설	없음
12	周官18 位不期驕	①位는 驕로 期티 아니며. 下同 ②位는 期티 아니호야두 駕호며 ③驕를 期호는 주리 아니며 *今按 首說第三說 皆是. 但第二說 今人 多從之者. (중략) 當云 “驕로 期티 아 니호야도 호며”	②位는 期티 아니호 야두 駕호며	통설	모호
13	呂刑14 在今爾安百姓	①이제 네 百姓을 安호매 在홀딘댄 *諸釋同之 非也. 當云 “이제 네게 이셔”	今애 이셔 네 百姓 을 安□ 홀딘댄	독자?	없음

〈표 4〉에서 『서전언해』가 통설을 주로 채택한 것은 우선 『서집전』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테다. 교정청본 사서언해가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당대 경전 독해의 관습과 통설을 그대로 준수하고자 했듯이,⁷⁸⁾ 『서전언해』도 〈표 4〉의 3번 조목처럼 蔡傳의 설명이 양쪽으로 다 해석 가능할 때면 기준의 통설을 그대로 준수하려 한 것이다.

「서경」「虞書」「臯陶謨」7장: 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서석의』: ①天의 聰明이 우리 民의 聰明으로 自호며. 下同

②天의 聰明이 우리 民으로 自호야 聰明호며. 下同

퇴계: ①을 따라야 함⁷⁹⁾

『서전언해』: ②天의 聰호며 明호이 우리 民으로부터 聰호며 明호며

〈고요모〉 7장의 “天聰明 自我民聰明”은 ①“天의 聰明함이 我民의 聰明함으로 부터 하며”인지 ②“天의 聰明함이 我民으로부터 聰明하며”인지가 문제되는 구절이다. 이때 퇴계는 長文의 설명을 붙여, 많은 사람들이 ②를 따르지만 그것은 그르니 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퇴계는 이 문장이 〈泰誓中〉 7장 “天視 自

78) 유영옥, 2010 앞의 박사학위논문, 210면.

79) 『서석의』「虞書」「臯陶謨」7장(제15조) “今按 此後說 人多從之, 詳其文義 恐不然也. (중략) 泰誓曰 ‘天視 自我民視, 天聽 自我民聽’ 其言 正如此同一句法, 而朱子曰 ‘天豈有耳目以視聽? 只是自民之視聽 便是天之視聽.’ 今以此語看 此 (중략) 而說泰誓之文 亦有依此例以釋者 皆非也.”

我民視 天聽 自我民聽”과 동일한 구법이며, 또 小註에서 주자가 “天이 어찌 耳目이 있어 視聽하겠는가? 단지 民의 視聽으로부터 곧 天이 視聽한다”는 말에 근거하여 이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서전언해』는 퇴계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②를 선택하여 〈고요모〉 7장을 언해하였다.

그런데 『서전언해』는 퇴계가 구법이 같다고 본 〈태서중〉 7장에 대해서는 〈고요모〉 7장과 달리 ①로 해석하였다. 이는 아마도 두 장의 蔡傳이 조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서경』 〈고요모〉 7장: 天聰 明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서경』 〈태서중〉 7장: 天視 自我民視, 天聽 自我民聽

『서집전』 〈고요모〉 7장 주: 天之聰明 非有視聽也 因民之視聽 以爲聰明

『서집전』 〈태서중〉 7장 주: 天之視聽 皆自乎民

『서전언해』 〈고요모〉 7장: ②天의 聰호며 明호이 우리 民으로부터 聰호며 明호며

『서전언해』 〈태서중〉 7장: ①天의 視호함이 우리 民의 視로부터 視호함

『서석의』 〈태서중〉 7장: 天의 視 | 우리 民의 視로 自호시며. 此說是

○우리 民으로 自호야 視호시며. 說見臯陶謨

퇴계의 주장처럼 〈고요모〉 7장의 해당 구절은 〈태서중〉 7장의 해당 구절과 어법이 같아 보이니, 두장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듯하다. 『서집전』은 조금 애매한데,⁸⁰⁾ 蔡註의 핵심을 〈고요모〉 7장에서 “以爲聰明[～로써 聰明하며]”로 보고, 〈태갑중〉 7장에서 “自乎民[民으로부터 하며]”로 본다면, 『서전언해』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서집전』이 불분명할 때, 대다수는 각각의 해당 구절에 달린 蔡註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듯하고, 『서전언해』 역시 그러한 다수의 인식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서전언해』는 〈표 4〉의 10번 조목에서 蔡傳의 설명이 명확한 데도 기존의 언해를 따르고 있다. 10번 조목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0) 『서집전』 「虞書」 〈臯陶謨〉 7장 주 “天之聰明 非有視聽也 因民之視聽 以爲聰明, 天之明畏 非有好惡也 因民之好惡 以爲明畏.”

『서경』「周書」〈大誥〉10장: 葛其不于前寧人圖功 攸終

『서석의』: ①기준 釋文: 前寧人의 圖功애 終할 배 아니호리오

퇴계: 吐: 當曰 “前寧人에 圖功攸終호리오”

『서전언해』: ①吐: (葛其不于)前寧人圖功애 攸終호리오

여기서는 ‘于’자가 ‘前寧人’에 속하는지 ‘前寧人圖功’에 속하는지가 관건인데, ‘于’자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前寧人’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달라진다. 『서집전』은 前寧人을 ‘武王의 大臣’으로 보았기에 “我葛其不於前寧人 而圖功所終乎”라 하여, ‘于[於]’자를 ‘前寧人’에 귀속시켰다. 그래서 퇴계는 蔡註와 같이 언해 할 것을 주장했지만, 『서전언해』는 기준의 통설을 따라 바꾸지 않았다.⁸¹⁾

이로 보면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永樂三大全을 근간으로 발전했던 多技한 諸說들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통설을 택하는 경향이 교정청본 사서언해보다 좀 더 강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서경』이라는 텍스트가 가진 원천적인 문제 때문이라 여겨진다.

『서경』은 경문의 일부가 僞作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본래 글이 난해하여 『서집전』에 철저히 입각한다 해도 제대로 해석하기 매우 힘들다. 또 대본인 『서집전』은 주자가 직접 주석하지 않아 先儒들로부터 다분히 의심을 받아 왔다.⁸²⁾ 조선후기 학자들로부터 『서전언해』가 경전언해서 가운데 가장 오류가 많다고⁸³⁾ 비판받는 까닭도 바로 『서경』 자체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이다. 특히 「周書」8誥는⁸⁴⁾ 聾牙하여 제일 읽기가 어렵다. 하다못해 官撰의 경서언해서를 적극 존중하는 魏伯珪조차도 『서전언해』의 8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81) 이 구절에 대해서는 주 61번 참조.

82) 正祖, 『弘齋全書』 권180, 「羣書標記2: 御定2」〈尚書講義八卷[寫本]〉 “尚書 自禹謨枚卜功臣條以下 未經朱子筆授 故先儒多疑蔡傳. 如堯典之曆象 舜典之璣衡律呂 禹貢之地理 洪範之九疇 各自爲說 殆同聚訟 而今古文眞僞之辨 尤千古未決之案也.”

83) 白慶楷, 『守窯集』 권7, 「雜識」〈讀尚書[壬戌]〉 “經傳諺解 乃是我東先儒之會確以成者 而多有未照管處, 書傳諺解尤多 可恨.”

84) 8誥는 『서경』「商書」〈仲虺之誥〉〈湯誥〉, 「周書」〈大誥〉〈康誥〉〈酒誥〉〈召誥〉〈洛誥〉〈康王之誥〉를 말한다. 흔히 「周書」8誥로 불리는 이 篇들은 『서경』에서 가장 난해한 글로 유명하다.

경서언해는 대저 모두 신명에 통하고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 주자의 訓詁와 서로 표리가 되는데도, 읽는 사람이 매번 대충 소홀히 보아 넘기니, 슬프도다! 유독 『상서』 8誥의 언해는 서너 곳이 의심스러운데, 본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⁸⁵⁾

그러므로 諸說을 참작하여 모범적인 定本을 만들어야 할 교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서경』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매우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국가권력으로 번역된 언해서가 획득할 막강한 공신력을 상상한다면, 난해한 『서경』의 언해 부담감은 한층 더 가중된다. 『서경』은 심혈을 기울여 언해해도 자칫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른 경전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서전언해』는 사서언해보다 상대적으로 당대의 다수가 주장하는 통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더욱 짙었던 것 같다. 즉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통설의 준수가 가져다주는 일말의 안전성을 최대한 추구했던 것이다.

5. 맷음말

텍스트는 어느 것이나 시대의 산물이다. 여말선초에 수용되어 조선의 지배이념으로 천명된 성리학은 16C 퇴·율을 기점으로 사상적 온축을 더하여, 조선후기 창조적인 자기화 과정을 겪으며 조선성리학으로 거듭 진화하였다. 선조 18~21년에 편찬된 교정청본 경서언해서는 주자성리학으로 귀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고, 난무하던 그 동안의 諸說들을 하나로 수렴함으로써, 조선전기 경학의 연구성과를 최종적으로 집대성하였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언해 사업이 종결된 지 2년 내에 간행되었지만, 삼경언해는 인출되지 못하고 임란에 유실되었다가, 결국 선조 34년 『주역』부터 재언해되는 수순을 밟았다. 『서전언해』는 『주역언해』가 새로 완성된 선조 36년(1603)

85) 魏伯珪, 『存齋集』 권7, 「讀書箚義:論語」〈子罕篇〉‘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經書諺解 大抵皆通神入妙 與朱子訓誥相爲表裏, 讀者每泛忽看過, 悲夫! 獨尙書八誥諺解 有四三可疑處, 由本文聱牙而然也.”

부터 편찬하기로 했으나, 선조조에는 간행되지 못한 듯하고, 광해군 2~3년(1610~1611)에 최초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적어도 인조 9년(1631) 이전에는 확실히 완간된 것으로 보인다.

교정청본 사서언해는 音讀·吐·釋文의 완성된 언해 양식을 갖추어 경문 전체를 一文一譯하는 한편, 주석을 배제하고 逐字譯에 충실하되 경문을 沿用했으며, 句讀와 懸吐의 정형화를 이루어 언해 형식의 전형을 마련하였다. 같은 시기 같은 주체가 언해한 교정청본 『서전언해』의 형식적 특징 또한 당연히 이와 거의 동일하다.

사서언해는 分章分節을 모두 臺本인 四書集註에 따르고, 重出·衍文·誤字·錯簡 등의 판단도 전부 集註에 의거하였다. 사서언해의 체재는 이처럼 집주에 철저히 입각하여, 주자성리학으로의 사상적 집약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경학적 의의가 있다.

교정청본 『서전언해』도 사서언해와 마찬가지로 臺本인 『書集傳』을 투철히 따랐다. 주자 제자 蔡沈이 저술한 『서집전』은 『서경』을 총 58편 887장으로 分定했는데, 『서전언해』는 한결같이 『서집전』의 分篇分章을 따랐고, 經文의 오류에 대한 판단 또한 『서집전』에 근거하였다. 『서전언해』의 이러한 義例는 사서언해의 그것과 동일한 경학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서전언해』는 經文의 오류에 대한 처리가 사서언해와는 약간 다르다. 사서언해는 해당 경문을 그대로 두되 그 音讀과 吐를 생략하거나 釋文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오류를 표시했지만, 『서전언해』는 아예 경문 자체에 손을 대어, 重出과 衍文의 경우는 경문을 바로 삭제해버렸고, 錯簡일 경우에도 경문의 순서를 미리 바로 잡아놓고 音讀·吐·釋文을 달았다.

교정청이 『서경』을 언해하면서 절대 진리인 경문에 이토록 과감히 손을 대는 것은, 사서에 비해 『서경』의 잘못된 경문을 한층 더 가치평가 절하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는 『서경』에 僞作과 闕誤錯簡한 글이 많아, 일부 경문에 대한 신뢰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서전언해』의 경학적 특징은 義例뿐만 아니라 준대법 구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사서언해는 堯, 舜-禹-湯-文, 武, 周公에게는 존대했지만, 일반 군주에게는 존대하지 않았고, 曾子에게는 존대하되 顏子에게는 존대하지 않았다. 이는 堯舜~孟子로 이어지는 儒家의 道統論이 사서언해의 존대법 구사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전언해』는 이와 달리 三代의 거의 모든 天子들에게 높임말을 썼다. 이는 『서경』이 원래 上古의 史官이 기록한 당대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또 폐위된 군주나 桀紂에게는 존대하지 않되, 폐위 이전 君臣 간의 대화일 때는 그들에게도 존대하였다. 이처럼 『서전언해』는 지극히 상황 논리에 입각하여 때 경 우마다 복잡다단하게 언해되었다. 「서전언해」가 도통론보다 상황 논리에 입각한 존대법 원칙을 우선시한 것은 교정청본 『서전언해』와 사서언해의 매우 큰 차이 점으로, 이 또한 經이자 史인 『서경』의 근본적 특징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교정청본 『서전언해』는 체재뿐 아니라 경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서집전』을 기본적으로 遵用하였다. 이는 사서언해가 집주를 준용하여 定本化함으로써 집주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경서 이해의 틀을 결정적으로 확립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또 사서언해가 大全本 小註나 여타의 朱註 및 古註를 참작했듯이, 『서전언해』도 蔡傳을 준용하되 小註나 孔傳 등을 채택해 경문의 보다 적확한 해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정청의 경서언해가 集註와 蔡傳을 교조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중요롭다.

한편, 교정청은 多技한 諸說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고의 定本을 성립시켜야 할 과제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언해와 『서전언해』는 공히 諸說을 두루 고찰하여 절충을 도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전언해』는 특히 당대의 通說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사서언해보다 강했다. 『서경』은 난삽하여 해석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무척 높다. 『서전언해』가 통설을 선호한 것은 그러한 해석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해서였던 것 같다. 따라서 기존 통설의 준수라는 특징 역시 『서경』이라는 텍스트가 가진 원천적인 문제에서 연유했다고 하겠다.

결국 經·史가 혼용된 이중적 성격, 僞作으로 의심되는 經文의 존재,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대목 대목들, 해석에 異說이 분분한 상황 등, 『서경』 자체의 특징 및 한계들이 『서전언해』에 자못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校正廳本 『書傳諺解』, 『書集傳』, 校正廳本 四書諺解, 義例, 존대법,
小註 · 古註, 通說

투고일(2018. 1. 31), 심사시작일(2018. 2. 9), 심사완료일(2018. 2. 26)

〈Abstract〉

A Study on the Gyojeongcheon Version of 『Seojeon Eonha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Classics

Yu, Young-Og *

The Gyojeongcheong version of 『Seojeon Eonhae』 was lost during the Imjinwaeran, and rep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classics, 『Seojeon Eonhae』 has main features, especially in terms of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such as being either scriptural or historic, some scriptural statements that may seem to be fake, other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different theories. These features wer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eogyeong』.

Thoroughly following 『Seojipjeon』, 『Seojeon Eonhae』 consisted of chapters and sections. In particular, some scriptural statements that 『Seojipjeon』 found wrong were included in 『Seojeon Eonhae』 after corrected. This was due to little trust in some such statements of 『Seogyeong』. Unlike 『Saseo Eonhae』, 『Seojeon Eonhae』 put its priority on the honorific system of language depending on situational logics rather than the theory of Taotong since 『Seogyeong』 is a classical sculpture and simultaneously a historical literature.

『Seojeon Eonhae』 mainly followed 『Seojipjeon』 in interpreting sculptural statements, but sometimes accepted minor or ancient annotations. It also strongly tended to follow conventional wisdom while negotiating all theories by local scholars, in an attempt to reduce any interpretational errors of 『Seogyeong』.

Key Words : the Gyojeongcheong version of 『Seojeon Eonhae』, 『Seojipjeon』, the Gyojeongcheong version of Saseo Eonhae, ritual, the honorific system of language, conventional wisdom, minor annotation, ancient annotation

* Researching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ong-A University.